

충청북도 문화현장 운영조례안 검 토 보 고 서

1. 제 출 자 : 충청북도지사

2. 제출 및 회부일자

- 제출일자 : 2008년 9월 9일
- 회부일자 : 2008년 9월 12일

3. 제안이유

- 미래 충북의 가치와 비전을 담은 “충청북도 문화현장”의 실효성 확보와 문화정책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함

4. 주요골자

- “충청북도 문화현장”은 도민의 문화권리와 자치단체의 책무를 주 내용으로 함(안 제2조)
 - 전문은 현장의 기본이념
 - 항목은 전문에 포함된 현장정신의 구체적인 사항
- 문화현장의 실천(안 제3조)
- 문화현장의 활용(안 제4조)

5. 검토의견

- 충청북도 문화현장 운영조례안을 검토한바
- 미래충북의 가치와 비전을 담아 문화선진도의 위상을 높이고 문화현장의 실효성 확보와 문화정책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
- 본 조례의 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됨